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가족”

2009 제4차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 일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전10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주최 | 대전발전연구원



포럼 진행 일정

| 시 간 | 내 용 |
|---------------|---|
| 10:00 ~ 10:05 | ○ 개회 및 환영사 환영사: 육동일(대전발전연구원장) 사 회: 박노동(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10:05 ~ 10:10 | ○ 참석자 소개 |
| 10:10 ~ 11:10 | ○ 패널토의 좌 장: 이채식(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아동과 교수) 패널리스트: 김윤경(대전시장장애인부모회) 오영훈(혜천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원종대(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이규원(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11:10 ~ 11:30 | ○ 종합토의(좌장진행) |
| 11:30 ~ 11:40 | ○ 정리 |
| 11:40 | ○ 폐회 |

2009 제4차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 참가자 명단(가나다순)

| 성 명 | 소 속 | 사무실 |
|-----|------------------------------|----------------------|
| 곽문성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장애아동돌봄사업단 | 527-1654 |
| 구영본 |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 | 252-9989 |
| 구은열 | 좋은집한채 시설장 | 242-8582 |
| 권영국 | 한발사랑봉사회/대전금빛평생교육봉사단 부단장 | 528-7382 |
| 권용명 | 도토리작업활동센터장 | 535-4240 |
| 김금숙 | 대전광역시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600-3532 |
| 김금옥 | 대전장애인부모회 정책이사/혜광학교 학부모회장 | 488-9457 |
| 김동식 | 한발사랑봉사회장/대전금빛평생교육봉사단장 | 934-3404 |
| 김미경 | 대전장애인부모회 부회장/맹학교 학부모회장 | 488-9457 |
| 김미량 | 대전장애인부모회 이사 | 488-9457 |
| 김민선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장애아동돌봄사업단 | 527-1654 |
| 김윤경 | 대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대전장애인가족지원센터 팀장 | 488-9457 |
| 김정미 | 대전장애인부모회/구봉고등학교 학부모 | 488-9457 |
| 김정은 | 충남대학교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복지주사보 | 821-5057 |
| 김진실 | 대전치료교육기관연합회 사무국장/참좋은언어치료센터장 | 471-7540 482-7556 |
| 김학만 |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교수 | 630-9847 |
| 김혜란 | 샤론원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 585-9525 |
| 김현미 | 생명장애인주간보호센터 팀장 | 286-9190 |
| 김현우 | 대전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 252-8365 |
| 김혜진 | 대전장애인부모회/맹학교학부모 | 488-9457 |
| 남지연 | 대전장애인부모회 사회복지사 | 488-9457 |
| 단윤경 | 대전장애인부모회 재무이사 | 488-9457 |
| 두오균 | 대전광역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630-1479 |

| 성명 | 소속 | 사무실 |
|-----|-------------------------------|----------------------|
| 류인화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과장 | 527-1654 |
| 문성숙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장애아동돌봄사업단 | 527-1654 |
| 박노동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위원 | 530-3523 |
| 박세아 | 한국행복한재단 대표이사 | 822-8591 |
| 박세용 |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과장 | 540-3500 |
| 박소정 | 샤론원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실습생 | 585-9525 |
| 서정숙 | 대전장애인부모회 이사 | 488-9457 |
| 송경희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장애아동돌봄사업단 | 527-1654 |
| 송정원 | 대전장애인부모회 총무이사 | 488-9457 |
| 신경희 | 샤론원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실습생 | 585-9525 |
| 심선경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장애아동돌봄사업단 팀장 | 527-1654 |
| 심정인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여성가족정책팀 위촉연구원 | 530-3549 |
| 양연임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 527-1654 |
| 오영훈 | 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오희순 | 대전장애인부모회 부회장/도토리주간보호센터장 | 488-9457 533-9457 |
| 오희중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기획팀 사회복지사 | 486-2373 483-2373 |
| 우정순 | 대전장애인부모회/맹학교 학부모 | 488-9457 |
| 원종대 | 대전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 480-7616 |
| 유형걸 | 대전농아인협회 통역사 | 673-1518 |
| 육동일 | 대전발전연구원장 | 530-3500 |
| 이계형 | 대전장애인부모회/혜광학교 학부모 | 488-9457 |
| 이규원 | 대전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600-5524 |
| 이선숙 | 대전장애인부모회/혜광학교 학부모 | 488-9457 |
| 이선옥 |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장 | 488-9457 |

| 성 명 | 소 속 | 사무실 |
|-----|-------------------------------|----------------------|
| 이유라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여성가족정책팀 위촉연구원 | 530-3548 |
| 이인숙 | 대전장애인부모회/충남고등학교 학부모 | 488-9457 |
| 이채식 |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아동과 교수 | 629-6154 |
| 임미연 |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 283-9190 |
| 임영자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 527-1654 |
| 장문영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 527-1654 |
| 장서현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 527-1654 |
| 정용아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팀 | 252-9997 |
| 정현경 | 샤론원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실습생 | 585-9525 |
| 조송순 | 대전농아인협회 통역사 | 673-1518 |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위원 | 530-3522 |
| 지교하 | 대전농아인협회장 | 673-1518 |
| 천인수 |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기획팀 사무국장 | 483-2373 |
| 최계희 | 샤론원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팀장 | 585-9525 |
| 최소라 | 대전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위촉연구원 | 530-3546 |
| 최송춘 | 샤론원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장 | 585-9525 |
| 최은숙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 527-1654 |
| 최정아 |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 527-1654 |
| 표선숙 | 샤론원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실습생 | 585-9525 |
| 홍점숙 | 대전치료교육기관연합회 대표/홍샘특수교육원장 | 471-7540 472-4864 |
| 황성업 | 연광원 재활과장 | 581-0083 |

2009 제4차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 운영위원

|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530-3522 |
| 박노동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530-3523 |
| 김윤경 | 대전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 488-9457 |

2009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대전지역의 가족현상을 파악하고,
- 가족의 가치 확대와 가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전시민의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며,
- 변화에 적응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이끌어내고,
- 건강한 가정과 미래경쟁력을 가진 대전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시민운동 (New City Movement)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9 대전 가족 공동체 포럼은

포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1) 대전가족공동체포럼

- ① 목적 : 대전지역사회의 가족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의견 수렴
- ② 방법 : 전문가 및 대전 시민을 초청한 정규 포럼
전문가 및 단체 (교수,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기업, 종교인 등)
시민 : 시의회 및 가족에 관심이 있는 대전 시민
- ③ 효과 : 지역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통합적 가족정책수립
대전시,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문화 확산
- ④ 시기 : 8회 예정
- ⑤ 주관 : 대전발전연구원 (협조: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2) 가족관련행사

- ① 목적 :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대전시민의 자발적 참여운동
- ② 방법 : -캠페인 및 슬로건 : 지속성행사
 - 목적 : 가족이미지, 가정철학 찾기(발견하기)
 - 방법 : 캠페인/슬로건 <-언론, 기업, 민간추진단체 등등
 - 효과 : 캠페인에 의한 언론성->시민계몽 및 교육효과

-가족슬로건(표어) 만들기 :

이젠 “가족”입니다 와 관련된 슬로건 만들기 (공모/컨설팅)

-가족에 관심 있는 시민 모으기 운동

· 목적 : 대전시민의 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유도

· 방법 : 자발적인 가족운동지원/ 단체중심의 운동지원

-특별 행사(주제/ 월별/ 주체/대상가족 등등)

· 방법 : 대전시 주관 가족 프로그램 진행

기업추진 가족 프로그램 지원(대전시와 공동 진행)

민간단체추진 가족 프로그램지원(대전시와 공동 진행)

③ 시기 : 2회 예정

④ 주관 : 대전시, 대전발전연구원, 민간단체, 기업 등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윤경

(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대전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회 사무국장
김윤경

2009년 들어 가족공동체 포럼을 통해 '생애주기별 장애인가족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필요한 장애인가족지원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가족체계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생애주기별 장애인가족지원 방안의 마지막 주제로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방안에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장애인가족의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고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방안의 하나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

자녀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가족구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가족의 생활 방식이나 구성원의 역할에 변화 발생. 이러한 변화들은 가족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장애인가족은 일반 가정에 비해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다양한 장애인가족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며,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가족지원의 정의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가족지원이란 Dunst(1990)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정의를 개인 및 가족의 기능 강화와 가족 구성원과 가족 전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방법으로 가족들에 대한 자원과 지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노력이

라 했으며, Weissbourd와 Kagan(1989)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와 양육자로서 그들의 역할 수행을 위한 능력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서비스를 가족에 제공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Knoll 등(1990)은 장애인과 가족이 스스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지원이 시행되어야 하며, 가족지원 체제 및 전문가가 가족이 필요한 자원을 보다 많이 이용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며,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함을 강조했다(한현정, 2003).

따라서 장애인가족지원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가족에게 능력주기(enabling)
- 2) 가족에게 힘 실어주기(empowering)
- 3) 강화하기(enhancing)와 촉진하기(promoting)
- 4) 가족 능력(family capability)
- 5) 가족기능 지원 및 강화(support/strengthening family functioning)

이처럼 가족지원이란 그 가족의 강점을 개발하고 증진시켜 가족의 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가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가족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괄적인 활동 또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대전장애인부모회, 2008).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가족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련 기관이 장애인의 치료와 교육 또는 장애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제한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머물렀고,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절실하다(윤종술, 2008).

장애인 가족의 문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체계들과 연계를 통해서 가족의 전반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장애 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예방과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하여 장애인 가족이 갖는 어려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가족기능을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가족역량 강화를 통해 생애주기와 발달단계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처양식을 개발하고 가족역할의 재구조화를 통해 가족이 새롭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중심의 실천가치와 가족의 역량강화, 즉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둔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가족중심실천을 위한 미국의 가족지원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의 6가지로 제안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¹⁾.

① 지속적인 결과물의 산출

장애인 가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존재하기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²⁾.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면서 장애 가족과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계획

사례관리 계획은 장애자녀의 복지와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사례관리 계획은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정이 요구되며, 계획과정에서 부모의 참여가 요구된다.

③ 다른 체계와의 연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과 기관을 연결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가족과 관련된 법령과 교육영역, 보건의료체계의 연계 등 필요에 따라 법률개정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1) 윤종술(2008),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16회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대회 자료집」에서 발췌하였음.

④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장애인 가족의 요구와 필요는 다양하며 개별화될 필요가 있다. 개별화의 중요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장애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핵심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장애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융통성있는 서비스 조정을 통하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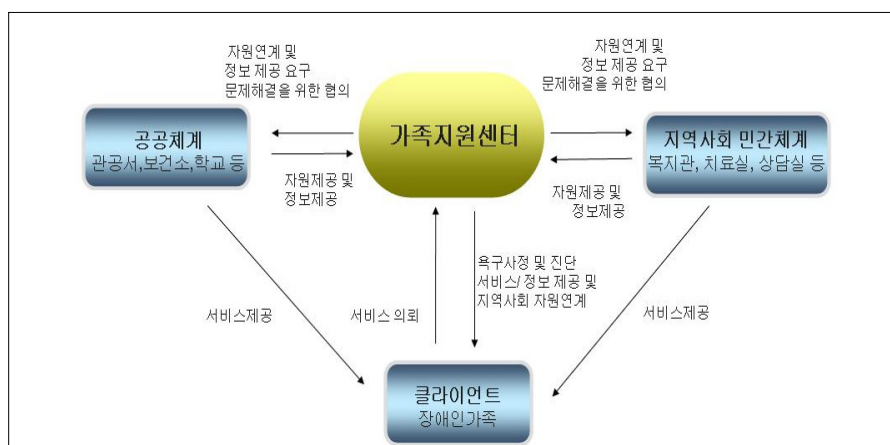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서비스들은 장애인 가족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용할 수 없거나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⑥ 가족의 능력 강화

장애인 가족은 이미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식적인 자원뿐만 아닐 비공식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가족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조직하고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체계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인가족은 필요할 때 가족지원센터를 찾아오면 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야 다양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이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며, 다양한 가족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례관리와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과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부 록>

장애인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가족지원 필요성 조사 결과



2009년 6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장애인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가족지원 필요성 조사 결과

1. 조사 목적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 정책의 평가와 정책 수요 및 수요자들의 욕구조사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우리 지역의 복지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수립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위한 기초 욕구파악을 위한 것이다.

2.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대상은 대전지역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만족도와 가족지원 필요성 인식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전지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부모와 성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 22명(뇌병변 장애 부모 9명, 지적 및 자폐성 장애부모 10명, 시각장애 부모 2명, 청각장애 부모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00여부를 배포하여 276부 회수하였으며, 무성의하게 작성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250부를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족도와 가족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장애자녀 일반적 사항

응답자 250명 중 장애자녀가 남자인 경우가 160명, 여자 90명이며, 연령은 10세 이하 64명, 11세에서 20세 이하가 155명, 21살 이상이 31명으로 조사 되었다.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116명(32.0%), 자폐성장애가 82명(22.7%)으로 전체 54.7%를 차지하였으며, 시각장애 36명(9.9%), 뇌병변 장애 31명(8.6%)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장애가 포함된 결과이다.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질장애, 정신장애 등은 지적장애나 뇌병변 장애와 함께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장애

정도가 점차 중복화, 중증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 등급은 1급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급 79명, 3급 35명으로 1급에서 3급 까지 중증장애인이 전체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장애자녀의 일반적 사항

| 구 분 | | 빈도 | 비율(%) |
|---------------------------|------------------|-----|-------|
| 성별(n=250) | 남자 | 160 | 64.0 |
| | 여자 | 90 | 36.0 |
| 연령(n=250) | 10살 이하 | 64 | 25.6 |
| | 11~20살 이하 | 155 | 62.0 |
| | 21살 이상 | 31 | 12.4 |
| 장애 등급(n=248) | 1급 | 123 | 49.6 |
| | 2급 | 79 | 31.9 |
| | 3급 | 35 | 14.1 |
| | 4급 | 2 | 0.8 |
| | 5급 | 1 | 0.4 |
| | 6급 | 2 | 0.8 |
| | 미등록 | 6 | 2.4 |
| 장애 유형(n=362) ¹ | 지체장애 | 24 | 6.6 |
| | 뇌병변장애 | 31 | 8.6 |
| | 시각장애 | 36 | 9.9 |
| | 청각장애 | 10 | 2.8 |
| | 언어장애 | 46 | 12.7 |
| | 지적장애 | 116 | 32.0 |
| | 자폐성장애 | 82 | 22.7 |
| | 정신장애 | 6 | 1.7 |
| | 간질장애 | 9 | 2.5 |
| | 기타(신장, 호흡기 장애 등) | 2 | 0.6 |

주1: 중복장애 포함

2) 장애 자녀의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능력

장애 자녀의 일상생활 능력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16명으로 46.4%를 차지했고,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 85명으로 34.0% 차지하였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38명으로 15.2%를 차지했으

며, 반면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9명으로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많은 장애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자녀의 의사소통 능력은 간단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104명(41.6%), 스스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88명(35.2%)로 나타남. 보호자 도움으로 간단한 의사표현 가능한 경우가 43명(17.2%), 의사표현 불가능한 경우 15명(6.0%) 나타났다.

간단한 의사표현과 스스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76.8%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의사표현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2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장애자녀의 일상생활능력 정도

| 구 분 | | 빈도 | 퍼센트(%) |
|-------------------------------|-------------------------|-----|--------|
| 장애자녀의 일상생활능력 정도 (n=250) | 전혀 할 수 없음 | 9 | 3.6 |
| | 대부분 도움이 필요 | 85 | 34.0 |
| | 일부 도움 필요 | 116 | 46.4 |
| | 스스로 할 수 있음 | 38 | 15.2 |
| | 기타(어려서 할 수 없음) | 2 | .8 |
| 장애자녀의 의사소통능력 정도 (n=250) | 의사표현 불가 | 15 | 6.0 |
| | 보호자 도움으로 간단한 의사표현 가능 | 43 | 17.2 |
| | 간단한 의사표현 가능 | 104 | 41.6 |
| | 스스로 의사표현 가능 | 88 | 35.2 |

3) 장애자녀 양육가족의 일반적 사항

장애자녀 양육가족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어머니들로, 장애 자녀 양육을 대부분 어머니들이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40세 이하 77명으로 31.7%를 차지했고, 41세에서 50세 이하가 139명으로 57.2%, 51세 이상이 27명으로 11.1%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이 고졸 이상이 213명으로 전체 89.5%로 나타나 학력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75.5%(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70.3%로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낮은 소득수준과 경제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자녀의 치료와 보장구 구입 등 추가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주거유형은 163명이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40가정, 다가구주택 20가정 등 나타났다.

〈표3〉 장애자녀 양육가족의 일반적 사항

| 구 분 | | 빈도 | 퍼센트(%) |
|----------------------|-------------------|-----|--------|
| 보호자의 연령 (n=243) | 40세 이하 | 77 | 31.7 |
| | 41세~50세 이하 | 139 | 57.2 |
| | 51세 이상 | 27 | 11.1 |
| 장애가족과의 관계 (n=238) | 아버지 | 11 | 4.6 |
| | 어머니 | 216 | 90.8 |
| | 조부모 | 2 | 0.8 |
| | 형제자매 | 7 | 2.9 |
| | 친인척 | 2 | 0.8 |
| 학력 (n=238)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6 | 2.5 |
| | 중학교 졸업 | 19 | 8.0 |
| | 고등학교 졸업 | 125 | 52.5 |
| | 대학교 졸업 이상 | 88 | 37.0 |
| 직업 (n=241) | 전문직 | 18 | 7.5 |
| | 사무직 | 3 | 1.2 |
| | 생산기능직 | 3 | 1.2 |
| | 판매서비스직 | 9 | 3.7 |
| | 전업주부 | 182 | 75.5 |
| | 기타 | 26 | 10.8 |
| 주거 유형 (n=244) | 아파트 | 168 | 68.9 |
| | 단독주택 | 42 | 17.2 |
| | 다가구주택 | 20 | 8.2 |
| | 상가주택 | 8 | 3.3 |
| | 기타 | 6 | 2.5 |
| 월소득 (n=232) | 100만원 미만 | 29 | 12.5 |
|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26 | 11.2 |
| |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36 | 15.5 |
| |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26 | 11.2 |
| |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46 | 19.8 |
| | 300만원 이상 | 69 | 29.7 |

4)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복지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는 교육기관, 복지기관, 정부복지시책, 복지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 중 2점대에 머물고 있다. 3점 이상 나타난 항목이 전체 34개 항목 중 7개 항목으로 전체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역별 이용 및 만족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① 교육기관 및 서비스

교육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을 보면 방과 후 활동 이용률이 64.9%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통비, 계절학교 등 방학프로그램을 30%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 통합교육, 조기교육실, 놀이방 및 어린이집,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등의 이용률은 30%를 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방과후 활동의 경우 만족도는 3.27점으로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교육청에서 방과후 교육비로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용률은 높은 반면 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족으로 만족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은 개인에게 매월 10만원까지 지원해주거나, 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학원 등에서는 장애학생의 수강을 꺼려하기도 하며,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시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에 그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시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나 방학프로그램이 없어요. 특히 중학교 이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고, 일반 학원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워요.

교육기관 및 서비스 만족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특수학교로 평균 3.5을 받았다. 이에 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급은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일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 비장애학생들이나 담임교사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편의시설, 통학 지원, 장애에 대한 인식 등의 문제로 인해 특수학교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

일반학교는 등학교때 차량 지원이 안되니까 특수학교랑 비교가 되고 방과 후 같은 경우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따라 정말 많이 달라져요. 선생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터뷰)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보니까 장애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우리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음악시간에 노래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아서 학교 가기 싫다 하더라고요. 언어소통이 어려우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고 풀기까지가 힘들죠

위의 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통학차량의 이유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부분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교육기관 및 서비스 이용 만족도

| 구분 | 내용 | 이용 빈도 (%) | 만족도 | | | | | | | 평균 | 표준 편차 |
|---------------|---------------|---------------|--------------|--------------|--------------|--------------|--------------|----------------|------|-------|-------|
| |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합계 | | | |
| 교육기관 및 서비스 이용 | 유치원 통합교육 | 65 (25.9) | 6 (9.2) | 19 (29.2) | 23 (35.4) | 13 (20.0) | 4 (6.2) | 65 (100.0) | 2.85 | 1.049 | |
| | 조기교육실 | 70 (27.9) | 3 (4.3) | 15 (21.7) | 36 (52.2) | 13 (18.8) | 2 (2.9) | 69 (100.0) | 2.94 | .838 | |
| | 놀이방, 어린이집 | 61 (24.3) | 5 (8.5) | 16 (27.1) | 25 (42.4) | 9 (15.3) | 4 (6.8) | 59 (100.0) | 2.85 | 1.014 | |
|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56 (22.3) | 11 (20.0) | 10 (18.2) | 18 (32.7) | 13 (23.6) | 3 (5.5) | 55 (100.0) | 2.76 | 1.186 | |
| | 일반학교 | 110 (43.8) | 15 (14.0) | 21 (19.6) | 38 (35.5) | 27 (25.2) | 6 (5.6) | 107 (100.0) | 2.89 | 1.110 | |
| | 특수학교 | 110 (43.8) | 5 (4.6) | 8 (7.4) | 37 (34.3) | 44 (40.7) | 14 (13.0) | 108 (100.0) | 3.50 | .972 | |
| | 특수학급 | 122 (48.6) | 7 (5.9) | 17 (14.3) | 46 (38.7) | 36 (30.3) | 13 (10.9) | 119 (100.0) | 3.26 | 1.029 | |
| | 방과후 활동지원 | 163 (64.9) | 9 (5.7) | 29 (18.5) | 46 (29.3) | 56 (35.7) | 17 (10.8) | 157 (100.0) | 3.27 | 1.066 | |
| | 교통비 지원 | 104 (41.4) | 14 (13.7) | 14 (13.7) | 31 (30.4) | 37 (36.3) | 6 (5.9) | 102 (100.0) | 3.07 | 1.137 | |
| | 계절학교 등 방학프로그램 | 90 (35.9) | 8 (9.0) | 16 (18.0) | 34 (38.2) | 27 (30.3) | 4 (4.5) | 89 (100.0) | 3.03 | 1.016 | |

② 복지기관 이용 및 서비스 만족도

복지기관 이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관이 3.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5점 만점에서 3점은 만족스럽다고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 등의 만족도는 2.67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며,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지 않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부족하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종합사회복지관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1급의 중증장

애인의 경우 상담을 하더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있다. 특히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 복지관 등에서 학습장애 등 정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육시설,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응답자 대부분이 학령기에 있어 이용률 낮은 것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으나, 체육시설(3개소)과 단기보호센터(4개소), 직업재활시설(1급의 중증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작업활동시설 4개소)의 경우는 그 시설 수 자체가 적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표 5〉 복지기관 서비스 이용 만족도

| 구분 | 내용 | 이용 빈도 (%) | 만족도 | | | | | | | |
|------|--------------|---------------|--------------|--------------|--------------|--------------|------------|----------------|------|-------|
| | |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 합계 | 평균 | 표준편차 |
| 복지기관 | 장애인종합복지관 | 108 (43.0) | 10 (9.6) | 14 (13.5) | 49 (47.1) | 28 (26.9) | 3 (2.9) | 104 (100.0) | 3.00 | .955 |
| |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 70 (27.9) | 6 (8.6) | 19 (27.1) | 37 (52.9) | 8 (11.4) | 0 | 70 (100.0) | 2.67 | .793 |
| | 체육시설 | 70 (27.9) | 7 (10.0) | 15 (21.4) | 29 (41.4) | 17 (24.3) | 2 (2.9) | 70 (100.0) | 2.89 | .986 |
| | 주간보호센터 | 60 (23.9) | 3 (5.1) | 20 (33.9) | 16 (27.1) | 17 (28.8) | 3 (5.1) | 59 (100.0) | 2.95 | 1.024 |
| | 단기보호센터 | 40 (15.9) | 6 (15.0) | 18 (45.0) | 8 (20.0) | 5 (12.5) | 3 (7.5) | 40 (100.0) | 2.53 | 1.132 |
| | 직업재활시설 | 45 (17.9) | 6 (13.6) | 14 (31.8) | 14 (31.8) | 9 (20.5) | 1 (2.3) | 44 (100.0) | 2.66 | 1.033 |
| | 공동생활가정 | 34 (13.5) | 1 (2.9) | 15 (44.1) | 11 (32.4) | 6 (17.6) | 1 (2.9) | 34 (100.0) | 2.74 | .898 |
| | 자립지원센터 | 35 (13.9) | 2 (5.7) | 13 (37.1) | 14 (40.0) | 5 (14.3) | 1 (2.9) | 35 (100.0) | 2.71 | .893 |
| | 동사무소 등 관공서 | 62 (24.7) | 10 (16.7) | 16 (26.7) | 26 (43.3) | 6 (10.0) | 2 (3.3) | 60 (100.0) | 2.57 | .998 |
|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 65 (25.9) | 8 (12.5) | 16 (25.0) | 28 (43.8) | 8 (12.5) | 4 (6.3) | 64 (100.0) | 2.75 | 1.039 |

(인터뷰)

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 정도가 약한 아이들을 원해요. 그래서 중증 아이들은 받아 주지를 않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진짜로 학습장애 애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 00이가 갈 수가 없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가 없어.

치률키관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요. 보기 편한 아이들만 보려고 하지, 뇌병변 아이들은 잘 봐주지도 않아. 신청해 놓아도 전화 한 통화 안봐요.

위의 사례들을 통해 복지관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알 수 있으며, 중증의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의 경우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정부 복지시책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표 6> 정부복지시책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 구분 | 내용 | 이용빈도 (%) | 만족도 | | | | | | | |
|--------|-------------------|---------------|--------------|--------------|--------------|--------------|------------|----------------|------|-------|
| |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합계 | 평균 | 표준편차 |
| 정부복지시책 | 생계비, 의료비 지원 | 72 (28.7) | 19 (28.8) | 17 (25.8) | 19 (28.8) | 10 (15.2) | 1 (1.5) | 66 (100.0) | 2.35 | 1.102 |
| |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 80 (31.9) | 25 (32.5) | 22 (28.6) | 17 (22.1) | 11 (14.3) | 2 (2.6) | 77 (100.0) | 2.26 | 1.140 |
| | 세금감면 | 154 (61.4) | 13 (8.8) | 24 (16.3) | 58 (39.5) | 43 (29.3) | 9 (6.1) | 147 (100.0) | 3.07 | 1.028 |
| | 생활요금감면 | 152 (60.6) | 17 (11.9) | 25 (17.5) | 68 (47.6) | 30 (21.0) | 3 (2.1) | 143 (100.0) | 2.84 | .962 |
|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74 (29.5) | 17 (23.6) | 17 (23.6) | 29 (40.3) | 5 (6.9) | 4 (5.6) | 72 (100.0) | 2.47 | 1.100 |
| | 활동보조인 서비스 | 99 (39.4) | 17 (17.9) | 14 (14.7) | 35 (36.8) | 20 (21.1) | 9 (9.5) | 95 (100.0) | 2.89 | 1.207 |
| | 중증장애인 가사지원 및 이동목욕 | 38 (15.1) | 5 (13.5) | 11 (29.7) | 15 (40.5) | 3 (8.1) | 3 (8.1) | 37 (100.0) | 2.68 | 1.082 |
| 복지서비스 | 의료재활 | 85 (33.9) | 17 (21.0) | 18 (22.2) | 37 (45.7) | 9 (11.1) | 0 | 81 (100.0) | 2.47 | .950 |
| | 직업재활 | 56 (22.3) | 12 (22.6) | 11 (20.8) | 23 (43.4) | 6 (11.3) | 1 (1.9) | 53 (100.0) | 2.49 | 1.031 |
| | 여가문화 | 62 (24.7) | 10 (16.9) | 17 (28.8) | 25 (42.4) | 6 (10.2) | 1 (1.7) | 59 (100.0) | 2.51 | .954 |
| | 이동지원 | 55 (21.9) | 13 (25.0) | 16 (30.8) | 17 (32.7) | 5 (9.6) | 1 (1.9) | 52 (100.0) | 2.33 | 1.024 |
| | 가족지원 | 56 (22.3) | 10 (18.9) | 13 (24.5) | 24 (45.3) | 5 (9.4) | 1 (1.9) | 53 (100.0) | 2.51 | .973 |
| | 상담서비스 | 56 (22.3) | 12 (22.2) | 15 (27.8) | 21 (38.9) | 4 (7.4) | 2 (3.7) | 54 (100.0) | 2.43 | 1.039 |
| | 장애관련 정보제공 | 80 (31.9) | 19 (24.1) | 20 (25.3) | 31 (39.2) | 5 (6.3) | 4 (5.1) | 79 (100.0) | 2.43 | 1.082 |

정부 복지시책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 역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3점 이상 받은 항목은 세금감면 항목이 3.0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만족스럽다기 보다는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최근 서비스가 시작된 장애아동재활시책서비스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은 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물론,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머니들과 인터뷰 중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많았는데, 특히 필요시간 산정 기준이나 교통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터뷰)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통학시간이 긴데, 근거리에 있는 아이도 똑같이 83시간을 받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정 되었으면 좋겠고, 서비스를 받아서 좋기는 한데 확대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한 달에 83시간 받아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닌데, 유류비를 20만원 내니까 부담이죠.

실태조사를 전화로 하는데 직접 나와서 아이를 보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 여가, 이동, 가족지원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2점대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동이나 가족지원 등은 사회 시스템의 부족과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복지서비스 개선 사항

① 교육서비스

교육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응답자의 전체 응답자 중 73명이 사회적응훈련이라고 답했으며, 2순위도 사회적응훈련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 총점으로 필요한 순위를 살펴보면, 사회적응훈련이 1위, 직업교육이 2위, 조기특수교육이 3위를 차지했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교보다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방과 후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표7〉 장애자녀 교육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 | 1순위 | | 2순위 | | 총점 ¹ | 순위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
| 조기특수교육 | 44 | 18.6 | 11 | 4.7 | 99 | 3 |
| 통합교육 | 27 | 11.4 | 18 | 7.8 | 72 | 5 |
| 특수학교 | 7 | 3.0 | 8 | 3.4 | 22 | 7 |
| 성교육 | 3 | 1.3 | 5 | 2.2 | 11 | 8 |
| 직업교육 | 35 | 14.8 | 37 | 15.9 | 107 | 2 |
| 방과후 교육 | 19 | 8.0 | 27 | 11.6 | 65 | 6 |
| 사회적응훈련 | 73 | 30.8 | 84 | 36.2 | 230 | 1 |
| 부모교육 | 2 | .8 | 5 | 2.2 | 9 | 9 |
| 장애인식개선 교육 | 27 | 11.4 | 37 | 15.9 | 91 | 4 |
| 합계 | 237 | 100.0 | 232 | 100.0 | | |

주1: 총점 = (1순위 × 2) + (2순위 × 1)

한편 교육에서 개선점으로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편의시설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의 부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 및 학생들의 장애인식 개선이 3순위, 직업교육 부족이 4순위로 나타났다.

〈표8〉 장애자녀 교육에서의 개선점

| | 1순위 | | 2순위 | | 총점 ¹ | 순위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
| 과밀학급 | 25 | 10.4 | 13 | 5.6 | 63 | 5 |
| 원거리 통학 | 15 | 6.2 | 9 | 3.9 | 39 | 6 |
| 교육 편의시설부족 | 65 | 27.0 | 54 | 23.2 | 184 | 1 |
| 교사 및 학생들의 장애인식 | 62 | 25.7 | 24 | 10.3 | 148 | 3 |
| 직업교육 부족 | 33 | 13.7 | 44 | 18.9 | 110 | 4 |
| 방과 후, 방학 중 교육 부족 | 40 | 16.6 | 74 | 31.8 | 154 | 2 |
| 기타 | 1 | .4 | 15 | 6.4 | 17 | 7 |
| 합계 | 241 | 100.0 | 233 | 100.0 | | |

주1: 총점 = (1순위 × 2) + (2순위 × 1)

② 지역사회 복지기관 개선점

<표 9>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의 개선점

| | 1순위 | | 2순위 | | 총점 ¹ | 순위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
| 이용료 부담 | 48 | 20.3 | 26 | 11.6 | 122 | 4 |
| 이용시간 및 기간 연장 | 60 | 25.3 | 48 | 21.3 | 168 | 2 |
|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 49 | 20.7 | 53 | 23.6 | 151 | 3 |
| 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 | 66 | 27.8 | 59 | 26.2 | 191 | 1 |
| 가족지원프로그램 | 10 | 4.2 | 34 | 15.1 | 54 | 5 |
| 기타 | 4 | 1.7 | 5 | 2.2 | 13 | 6 |
| 합계 | 237 | 100.0 | 225 | 100.0 | | |

주1: 총점 = (1순위 × 2) + (2순위 × 1)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개선점으로 1순위를 차지한 것은 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이용시간과 기간의 연장, 3순위는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확대로 나타났다.

이용시간과 기간의 연장, 성인장애인 프로그램 확대의 경우는 성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사회 현실 속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며, 동시에 이용시간 및 기간의 연장은 성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대개 2년에서 3년의 이용 기간을 정해두고 있어 2년, 3년마다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

2, 3년에 한번 씩 새롭게 이용할 시설을 찾아 상담하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스트레스며,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사회적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책 개선점

<표 10> 장애인 복지시책의 개선점

| | 1순위 | | 2순위 | | 총점 ¹ | 순위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
| 보편적인 경제적 지원 | 104 | 42.8 | 18 | 7.6 | 226 | 1 |
| 서비스 대상 확대 | 34 | 14.0 | 47 | 19.9 | 115 | 4 |
| 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 | 47 | 19.3 | 54 | 22.9 | 148 | 2 |
|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확충 | 35 | 14.4 | 52 | 22.0 | 124 | 3 |
| 서비스 종류 다양화 | 13 | 5.3 | 34 | 14.4 | 60 | 5 |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간소화 | 4 | 1.6 | 21 | 8.9 | 29 | 6 |
| 서비스 홍보 | 3 | 1.2 | 10 | 4.2 | 16 | 7 |
| 기타 | 3 | 1.2 | - | - | 6 | 8 |
| 합계 | 243 | 100.0 | 236 | 100.0 | | |

주1: 총점 = (1순위 × 2) + (2순위 × 1)

장애인 복지시책의 개선점으로 1순위는 보편적인 경제적 지원이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장애유형과 등급,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됨에 따라 실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받지 못하고,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권과 차상위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기타 저소득가정이 소외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에 보편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다.

2순위로는 서비스 질과 전문성 향상, 3순위는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확충, 그리고 서비스의 대상 확대가 4순위를 차지하였다.

대전시 경우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5개, 공동생활가정 17개, 주간보호시설 18개, 직업재활시설 10개 등이 있지만 장애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중증 성인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 주간보호시설 18개 중 6개소만 성인 장애인 대상이며, 특히 뇌병변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거의 없어 다양한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인터뷰)

고등학교 졸업 후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아요.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 시설이 없어요. 다른 학교처럼 전공과가 있는게 아니라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 몇 명 빼면 정말 다 집에 그냥 있게 되요.

우리 아나는 6학년인데, 벌써 저는 성인기를 생각하게 되요. 졸업 후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가정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해야 해요. 단기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기고, 단기보호센터는 24시간 열고 3교대해서 정말 갑자기 일이 생길 때 이용할 수 있게, 정말 필요해요.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이용시설의 확충이 얼마나 장애인 가족들에게 절실한 문제인지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성인기 지원 정책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성인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급한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에 대한 욕구도 많았다.

5) 가족지원의 필요성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와 함께 가족지원의 필요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는 평균 3점 이상 항목이 전체 34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가족지원 필요성은 거의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의 영역을 교육 및 양육, 가족관계 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사회적 지원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다시 세부항목을 나누어 전체 2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4개 항목에서 평균 4점 이상이 나왔으며, 5개 영역 중에서도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영역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가족지원서비스 영역별 필요성

| 가족지원서비스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교육 및 양육 지원 | 168 | 4.31 | .595 |
| 가족관계 지원 | 178 | 4.20 | .752 |
| 경제적 지원 | 194 | 4.68 | .513 |
| 의료 지원 | 186 | 4.51 | .779 |
| 사회적 지원 | 196 | 4.69 | .542 |

① 교육 및 양육지원 필요성

〈표 12〉 교육 및 양육지원 필요성

| 구분 | 가족지원서비스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합계 | 평균 | 표준편차 |
|------------|----------------------|------------|------------|--------------|--------------|---------------|----------------|------|------|
| 교육 및 양육 지원 | 교육 및 치료실 확대 | 2 (0.9) | 4 (1.9) | 5 (2.3) | 66 (30.8) | 137 (64.0) | 214 (100.0) | 4.55 | .722 |
| | 통합교육 | 3 (1.5) | 5 (2.5) | 14 (7.0) | 88 (44.0) | 90 (45.0) | 200 (100.0) | 4.29 | .823 |
| | 재택순회 교육서비스 | 4 (2.0) | 8 (4.0) | 20 (10.0) | 83 (41.5) | 85 (42.5) | 200 (100.0) | 4.18 | .914 |
| | 방과후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 | 3 (1.4) | 9 (4.2) | - | 70 (32.7) | 132 (61.7) | 214 (100.0) | 4.53 | .710 |
|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양육에 관한 정보 | 3 (1.5) | 2 (1.0) | 8 (4.0) | 88 (44.4) | 97 (49.0) | 198 (100.0) | 4.38 | .750 |
| | 장애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 3 (1.5) | 5 (2.5) | 18 (9.0) | 94 (47.0) | 80 (40.0) | 200 (100.0) | 4.21 | .826 |
| | 양육지원 프로그램 | 7 (3.6) | 8 (4.1) | 18 (9.2) | 79 (40.3) | 84 (42.9) | 196 (100.0) | 4.15 | .994 |

교육 및 양육지원 영역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교육 및 치료실의 확대로 평균 4.55점으로 나타났으며,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교육서비스 개선점에 대한 조사결과와 같은 것으로 방과 후나 방학 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4.38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부분도 4.2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 가족관계 지원 필요성

가족관계 지원 영역도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및 휴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부모교육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비장애 형제를 위한 부모역할과 비장애 형제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담이 3.95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13〉 가족관계 지원 필요성

| 구분 | 가족지원서비스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합계 | 평균 | 표준편차 |
|----------|--------------------------|------------|-------------|-------------|--------------|---------------|----------------|------|-------|
| 가족 관계 지원 |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상담 | 8 (4.1) | 14 (7.2) | 18 (9.2) | 94 (48.2) | 61 (31.3) | 195 (100.0) | 3.95 | 1.032 |
| | 비장애형제를 위한 부모 역할 | 6 (3.0) | 8 (4.0) | 9 (4.5) | 92 (46.2) | 84 (42.2) | 199 (100.0) | 4.21 | .928 |
| | 비장애 형제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6 (3.0) | 8 (4.1) | 12 (6.1) | 83 (42.1) | 88 (44.7) | 197 (100.0) | 4.21 | .950 |
| | 스트레스 대처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부모교육 | 5 (2.5) | 4 (2.0) | 10 (4.9) | 93 (45.6) | 92 (45.1) | 204 (100.0) | 4.29 | .848 |
| | 여가 및 휴가지원프로그램 | 5 (2.4) | 1 (0.5) | 9 (4.4) | 87 (42.4) | 103 (50.2) | 205 (100.0) | 4.38 | .805 |

조사결과 여가 및 휴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실제 여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면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욕구는 높으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가를 즐길 만큼의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항상 자녀들의 통학이나 귀가 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활용에 제약이 많이 따르며, 심리적으로도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래 두 인터뷰 내용이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

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인터뷰)

쉬어야 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오전에 1시간이나 2시간 뭐 하려고 허둥지둥 해가면서 나가는 것이 싫지. 늘 시간에 맞추어야 하니까 마음이 바쁜 거야.

장애자녀로 인해서 위축되는 경우도 많아. 집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수용정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아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엄마들 만나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

한편 부모교육에 관해서는 생애주기에 맞는 부모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욕구가 다르고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만큼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경제적 지원 필요성

정부복지시책 및 복지서비스 개선점에서 보편적인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그 필요성도 모든 항목으로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온 항목은 장애인 기초 연금 항목으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환경에서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14〉 경제적 지원 필요성

| 구분 | 가족지원서비스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합계 | 평균 | 표준편차 |
|--------|----------------|------------|------------|------------|--------------|---------------|----------------|------|------|
| 경제적 지원 | 장애인 기초연금 도입 | 2 (0.9) | 1 (0.5) | 5 (2.3) | 38 (17.6) | 170 (78.7) | 216 (100.0) | 4.73 | .621 |
| | 생계비 지원 | 2 (1.0) | - | 8 (3.9) | 60 (29.6) | 133 (65.5) | 203 (100.0) | 4.59 | .665 |
| | 장애아동 부양 수당 | 4 (1.8) | 1 (0.5) | 5 (2.3) | 53 (24.4) | 154 (71.0) | 217 (100.0) | 4.62 | .730 |
| | 세금감면 및 생활요금 감면 | 2 (0.9) | 1 (0.5) | 3 (1.4) | 57 (26.1) | 155 (71.1) | 218 (100.0) | 4.66 | .625 |
| | 치료 및 교육비 지원 | 3 (1.3) | - | 4 (1.8) | 55 (24.7) | 161 (72.2) | 223 (100.0) | 4.66 | .650 |

④ 의료지원 필요성

의료지원 영역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 보장성 보험가입의 확대 항목으로 4.66점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이유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장애 자녀에 대한 보험가입이 어려워 여러가지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타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막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 재활치료비용의 의료보험 확대는 4.52점, 의료장비 또는 보장구 구입 시 지원은 4.37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장비 또는 보장구 구입에 대한 지원은 수급권자와 차상위 가정에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특히 뇌병변 장애인 등은 성장에 따라 보장구를 계속 교체해야 하기에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개인이 구입하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공동구매 기회도 적으며, 역시 소득에 따라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장구 지원방법 및 정책에 개선이 시급하다.

<표15> 의료지원 필요성

| 구분 | 가족지원서비스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합계 | 평균 | 표준편차 |
|-------|--------------------|------------|------------|------------|--------------|---------------|----------------|------|------|
| 의료 지원 | 의료장비 또는 보장구 구입시 지원 | 6 (3.2) | 6 (3.2) | 8 (4.2) | 61 (32.1) | 109 (57.4) | 190 (100.0) | 4.37 | .944 |
| | 재활치료비용의 의료보험 확대 | 4 (1.9) | 5 (2.4) | 5 (2.4) | 59 (28.4) | 135 (64.9) | 208 (100.0) | 4.52 | .822 |
| | 일반 보장성 보험가입 확대 | 3 (1.4) | 4 (1.9) | 4 (1.9) | 41 (19.2) | 162 (75.7) | 214 (100.0) | 4.66 | .738 |

⑤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5개 영역 중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성인 장애인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4.7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 장애인의 지원정책,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충, 자녀의 법적 지위와 장애인 부모의 권리 보호 등 모든 항목에서 4.6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났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성인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욕구는 매우 절실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표16〉사회적 지원 필요성

| 구분 | 가족지원서비스 | 전혀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보통 | 필요함 | 매우 필요함 | 합계 | 평균 | 표준편차 |
|--------|--------------------------|------------|------------|------------|--------------|---------------|----------------|------|------|
| 사회적 지원 | 자녀의 법적 지위와 장애인 부모의 권리 보호 | 2 (0.9) | 1 (0.5) | 5 (2.3) | 50 (23.4) | 156 (72.9) | 214 (100.0) | 4.67 | .641 |
| | 성인 장애인 지원 정책 | 2 (0.9) | 2 (0.9) | 5 (2.2) | 37 (16.4) | 179 (79.6) | 225 (100.0) | 4.73 | .635 |
| | 성인 장애인 법적 보호장치 | 3 (1.4) | - | 4 (1.8) | 36 (16.5) | 175 (80.3) | 218 (100.0) | 4.74 | .628 |
| |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충 | 3 (1.4) | 3 (1.4) | 5 (2.4) | 49 (23.2) | 151 (71.6) | 211 (100.0) | 4.62 | .736 |
|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3 (1.4) | 3 (1.4) | 1 (0.5) | 41 (19.2) | 166 (77.6) | 214 (100.0) | 4.70 | .688 |

4. 결론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가족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원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1)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분석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영역에서는 특수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2.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복지기관 영역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00점에 그쳤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동사무소 등 관공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모두 2점대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복지시책에서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이동에 대한 항목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온 것은 현재 복지서비스가 수요자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결과는 교육 및 복지영역에서 개선점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교육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사회적응훈련과 직업교육을 꼽았고, 개선점으로는 편의시설과 방과 후 및 방학 중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을 꼽았다. 정부복지시책과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향상과 보편적인 경제적 지원이 개선해야할 사항 1순위로 나타났다.

2) 가족지원의 필요성

가족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5개 영역 중 사회적 지원영역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영역에서 가족지원의 필요성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 및 양육지원 영역에서는 교육 및 치료실 확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가족관계 지원에서는 여가 및 휴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에서는 장애인 기초연금에 대해, 의료지원에서는 일반 보장성 보험가입 확대, 사회적 지원에서는 성인 장애인의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3) 제언

복지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와 가족지원의 필요성 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 즉, 정책 수요자의 욕구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그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정책 수요자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이 중요하다.

장애인 가족지원의 필요성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 결과는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의 수요가 많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온 것은 생활시설에서 소외된 삶을 지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제 역할을 하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맞추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지원 정책은 각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전달체계로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절실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단기보호센터의 확충과 특히 중증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 동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나 복지 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사회적네트워크 구축

오영훈

(혜천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4차 대전 가족공동체 포럼

장애인가족 지원정책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Jun.30.2009 by

오영훈(혜천대학 사회복지과)

생애주기별 접근에 대해...

- # 최근 들어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정책에서 보여지듯이 아동에서부터 서비스내용면에서 생애주기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 국내외적으로 생애주기를 강조하는 경향은 보편적인 장애인복지 이념과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 # 장애인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념인 정상화와 사회통합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장애인의 경우에도 생애주기와 발달과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 # 따라서 생애주기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패러다임의 변화와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장애와 관련하여 생애주기(life span)의 개념을 서울시 99정책토론회에 발표 후 10년후 다시 이트를 달리하여 다루고 있다.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장애아동과 가족지원

가족지원의 의미

“ 장애아 가족들이 자녀의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드는 등의 능력을 지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들의 삶에 질적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장애 자녀의 교육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

생애주기와 장애종류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표 1> 장애 연령, 종류를 고려한 모형(이용득, 1999)

| 구분 | 0-2(유아) (A) | 3-4(학령전) (B) | 초등저 (C) | 초등고 (D) | 중,고(청소년) (E) | 정년 (F) | 장년기 (G) | 노년기 (H) |
|---------|----------------|-----------------|------------|------------|-----------------|-----------|------------|------------|
| 지체(가) | A가 | B가 | C가 | D가 | E가 | F가 | G가 | H가 |
| 뇌병변(나) | ANA | BNa | C나 | D나 | ENa | FNa | GNa | HNa |
| 시각(다) | AdA | BdA | C다 | D다 | EdA | F다 | G다 | H다 |
| 청각(라) | ArA | B라 | C라 | D라 | ErA | F라 | G라 | H라 |
| 언어(마) | AmA | B마 | C마 | D마 | EmA | F마 | G마 | H마 |
| 신장(바) | AbA | B바 | C바 | D바 | E바 | F바 | G바 | H바 |
| 심장(사) | AsA | B사 | C사 | D사 | EsA | F사 | G사 | H사 |
| 지적장애(야) | AyA | ByA | C야 | D야 | E야 | F야 | G야 | H야 |
| 정신장애(자) | A자 | B자 | C자 | D자 | E자 | F자 | G자 | H자 |
| 발달장애(차) | A차 | B차 | C차 | D차 | E차 | F차 | G차 | H차 |
| 기타(타) | AtA | B타 | C타 | D타 | E타 | F타 | G타 | H타 |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지역사회서비스 분류 준거를 활용한 서비스

<표 2> 지역사회 서비스의 분류(이용득, 1999)

| 구분 | 클라이언트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
|--------|-------------|----------------|
| 직접적 접근 | 상담, 아웃리치 | 예방교육 |
| 간접적 접근 | 권익옹호, 컨설팅이션 |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

<표 3> 아동기서비스(이용득, 1999)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
| 직접 클라이언트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사정 및 재활계획 수립 . 장애 및 가족 관련 상담 · 각종 교육, 치료 프로그램 |
| 간접 클라이언트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옹호 프로그램 . 생활 환경의 조정 . 부모 자조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개발과 연결 . 각종 상황에 대한 컨설팅이션 |
| 직접 지역사회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예방 자료 제작 및 보급 |
| 간접 지역사회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예방 조치를 위한 입법 및 조례 제정 운동 |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지역사회서비스 분류 준거를 활용한 서비스

<표 4> 청소년기 서비스(이용득, 1999)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
| 직접 클라이언트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사정 및 재활계획 수립 · 장애 및 가족 관련 상담 · 각종 교육, 치료 프로그램 · 생활적응훈련 프로그램 |
| 간접 클라이언트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옹호 프로그램 · 학교 및 가정 환경에 대한 원조 · 부모 자조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장애형제 프로그램 · 이용 가능한 자원의 개발과 연결 · 각종 상황에 대한 컨설팅이전 |
| 직접 지역사회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예방 자료 제작 및 보급 |
| 간접 지역사회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예방 조치를 위한 입법 및 조례 제정 운동 |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생태학적 관점으로의 변화

- # 기존의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생물학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 기반하여 아동중심의 직접 교수형태
- # “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환경과 아동을 하나의 통합적 조직체로 보고, 각각의 조직개체가 서로의 상호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체” 로 인식
- #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돕는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필요를 설명, 아동 개인이 아닌 가족전체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이 강조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가족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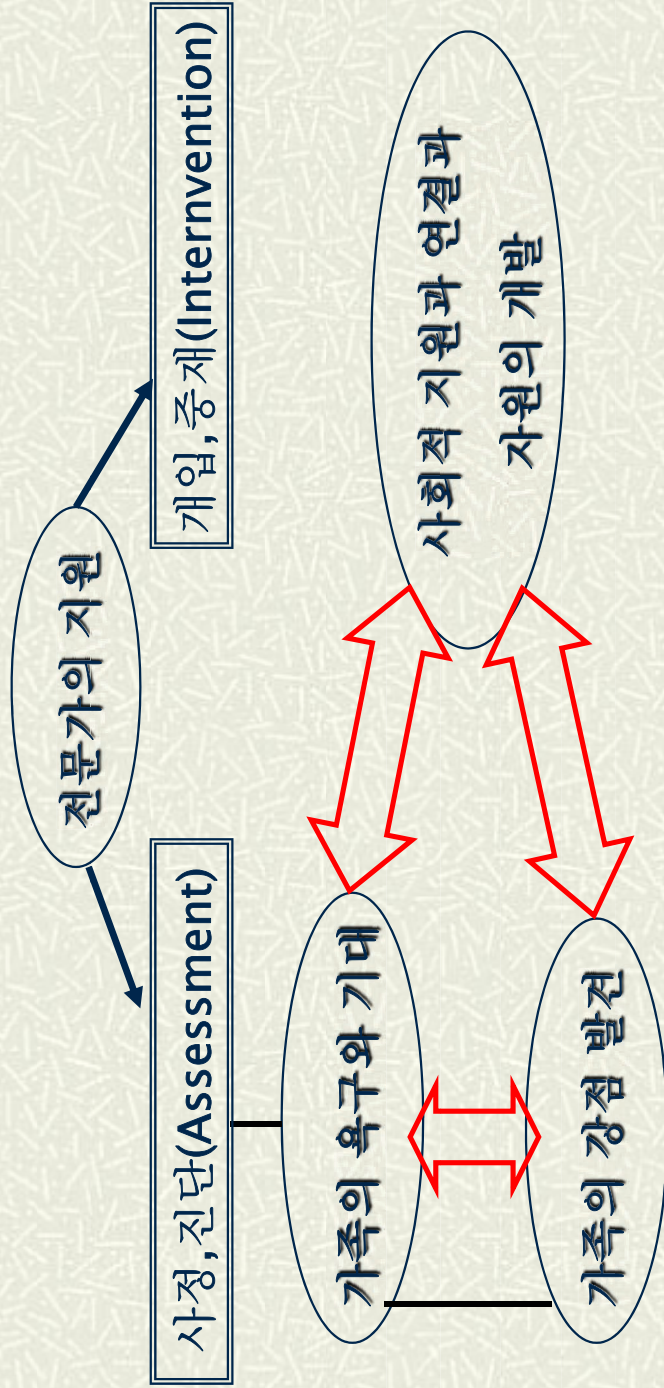
- #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욕구와 스트레스에 대한 문헌연구
 -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
- #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틀
 - 개별화된 가족지원 계획(Individualized Family Support Plan, IFSP)
- #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모델 역할
- # 지원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
 - 현황 파악후 문제점과 방향을 제안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기본모형

4가지의 구성요소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장애아동 & 가족지원 프로그램

- # 언어치료의 변화
- # 작업, 물리치료
- # 미술치료, 음악치료, 치료레크리에이션 등의 Activity Therapy
- # 가정과 이웃(지역사회)에서의 통합
- # 부모교육과 상담
- # 전환교육에서 부모의 역할과 가정지원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가족지원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

- # 가족 체계적 관점이 프로그램 운영면에 반영
- # 장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사회통합적 시각에서 접근
- #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부모로 국한하지 않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접근
- # 기존의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내용 외에 실질적 요구 반영
- # 가족지원프로그램은 개별기관 안의 자원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장애인복지 담당 사회복지사의 역할

“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

사례발견, 초기면접, 진단, 적격성 판정, 장애인복지 실천 계획수립,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실행, 사후지도 등 - 효과적인 면담과 사정과 평가, 재활서비스, 사례관리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

- # 조정자(Coordinator) : 타 영역의 전문가 지원, 연계, 자원 연결후 제공
- 치료재활의 분야를 연결하거나 직접 참여 하여 팀접근(Team Approach)
- # 상담사(Counselor) :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
- # 옹호자(Advocator) : 장애인을 위하여 일을 진행하고 말하는 것

* 위 3가지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사회복지사

2009-06-29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

12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의 유형

- # **의료영역** :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청각임상가
 - # **교육영역** : 특수교사, 특수체육교사,
 - # **직업재활영역** :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원, 직업훈련교사,
 - # **심리사회재활영역** :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치료레크리에이션사**,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원예치료사, 동물매개치료사, 활동보조인 등
- * 이준우, “장애인복지실천론”, 인간과 복지(2007), pp.147~178

치료레크리에이션의 목적

적당한 *여가생활스타일(Leisure life-style)의
개발, 유지, 표현을 보다 쉽게 하여 여가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가생활스타일(Leisure life-style)** : 전 삶의 경험 속에서 여가와 관련된 태도, 인식, 활동의 표현이 일상적인 행동에 표현되는 것이다.(Peterson, 1981)

* **장애인의 여가생활은 생명입니다. - ‘여가권’**

치료레크리에이션 과정 - APIE

사정 (Assessment)

클라이언트의 건강상태, 욕구, 강점을 명백하게 파악하는 단계

계획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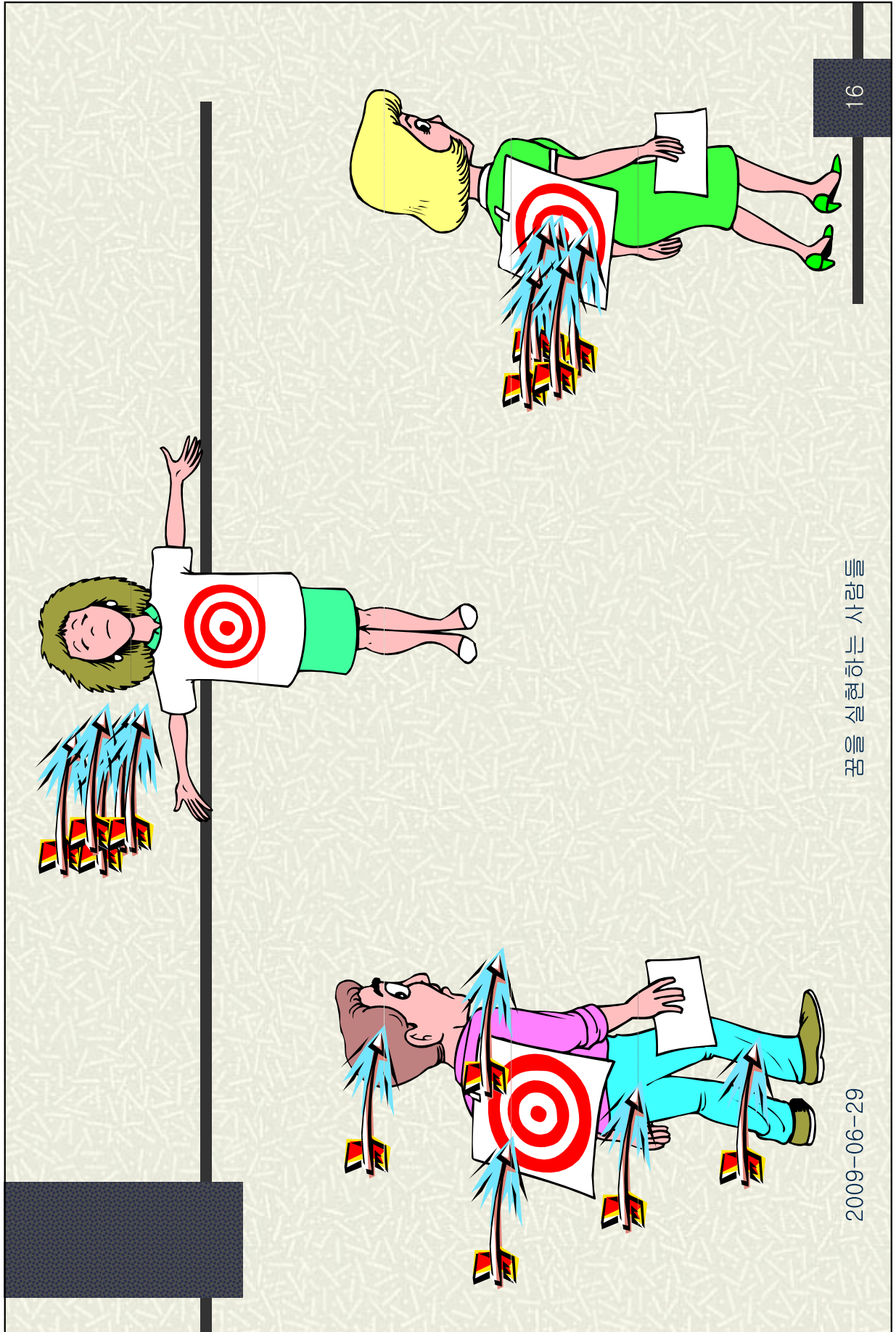
가능한 방법을 고안하는 단계(TPO, EO를 개인별, 집단별 작성)

실행 (Implem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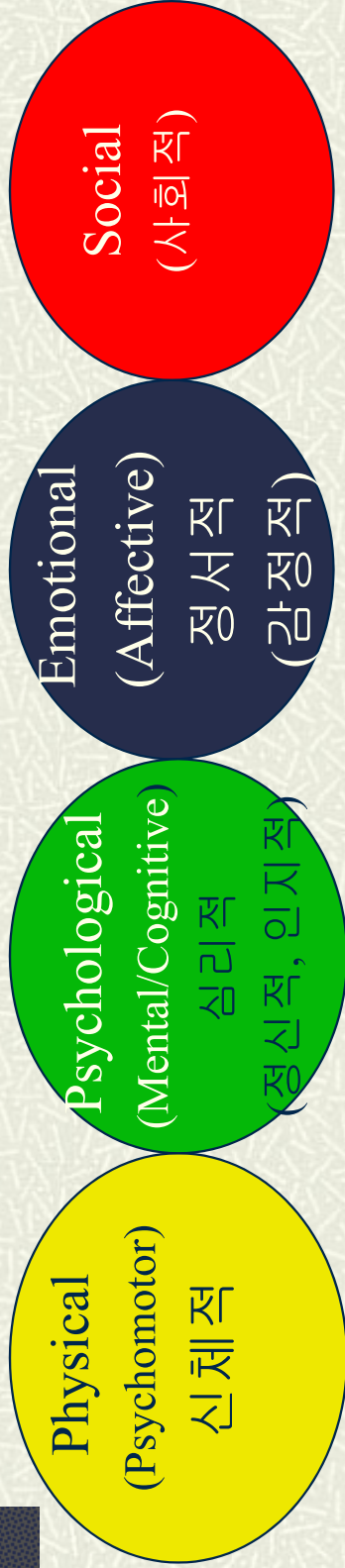
설정된 목표에 전문가의 개입하여 시행하는 단계

평가 (Evaluation)

계획된 목표가 잘 시행되었는지 파악하는 단계



삶의 질 (영역)



네 가지 삶의 질 영역들

- # Spiritual 영역
- # Occupational 직업적
- # Leisure functioning 여가 기능
- # Sense of well-being, etc. 안녕감

치료레크리에이션 활동영역

- 미술과 공예, 춤,
- 드라마, 관람과 오락,
- 취미활동, 문학 활동, 음악활동,
- 자연과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야외활동,
-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 특별한 이벤트 참여,
- 자원봉사 활동.

1.사정

- 1) 장애아동 가족의 욕구(스트레스 해결)
 - 정서적 긴장(슬픔, 우울, 거부, 분노 등)
 - 부부간의 불화
 - 형제간의 갈등
 - 발달단계에서 반복되는 긴장
 - 부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
 - 장애아동의 미래와 관련된 스트레스
 - 경제적 부담

2) 대처자원과 부모의 적응

- 개인적 대처 자원(부모)

- : 부모의 신체적 건강, 부모의 인생관과 신념,
부모의 성격변인, 부모가 장애에 관한 지식과 기술,
장애아동의 발생 원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교육 수준
- 가족과 사회적 대처자원(사회적 지지)
 - : 가족구성원의 지지, 확대가족·이웃·친구의 지지,
공식적·제도적 지지

2. 계획

1) 장애아동 가족 중심 지원프로그램(가족능력 고취)

- 공동체 의식을 증진
- 자연적이고 비공식적인 지원체계 활성화
- 가족과 전문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 책임 공유
- 가족 전체의 통합성
- 가족 기능강화에 초점 - 강점 모델
- 소비자 욕구 중심 - 촉진적인 접근

2) 개입 모델

- 가족의 욕구와 바람 (장애아동, 형제자매, 부모, 가족, 기타)
- 가족의 강점과 능력 (가족기능 수행의 스타일)
- 사회적 지원과 자원 (가족 내·외부, 비·공식적, 지역사회 자원)
- 전문가의 원조

3. 실행

- 1) 기능적 개입 서비스
; 장애영·유아 조기교육 / TR 프로그램 / 스트레스 대처
- 2) 여가 교육 서비스
; 부모·장애아동 여가인식 개선, 여가상담, 여가자원
- 3) 레크리에이션 참여 서비스
; 형제관계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여가 선용 프로그램

4. 평가

1) 프로그램 평가

; 클라이언트의 기능 증진, 인식 변화, 기회제공을 통한 자발적 참여

2) 운영 평가

; 계획한 프로그램의 원만한 진행, 자원 체계 운영평가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 사례

1. 지역사회 중심의 여가교육 프로그램 계획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중등도의 지적장애 학생(가명: 김영식)을 대상으로 여가교육 프로그램 계획 4 단계에 맞추어 적용의 한 예를 제시한다. 이는 장애학생이 최대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든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교사, 부모, 지역사회 전문가의 연계로 협력적인 장애학생의 지원망을 구축해야 함을 반영하였다.

㉠ 사정 단계 - 영식이 재학하는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일제 클럽활동 프로그램이 여가교육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모와 영식의 선호도를 고려한 볼링부를 선정하였다.

㉡ 계획 단계 - 지원망의 구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 가능한 인사를 탐색하고 섭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원망의 주요활동가로 특히 지역사회 기관인 청소년수련원의 클럽활동 지원교사가 포함되었다.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외의 관리요소의 계획이 중요하다. 내용 계획에서는 주로 실제 볼링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과제분석 및 수정방법, 교수계획이 제시되었으며, 관리 요소의 계획으로는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로 길을 잃었을 때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 실행 단계 - 영식과 같은 부서의 또래 학생을 준비시키는 방법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영식을 위한 개별화된 수정 작업에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 평가 단계 - 영식이 본인, 또래, 부모, 프로그램 자체 평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로 들었다.

〈 영식이의 지역사회 중심 여가교육 프로그램 〉

| 단 계 | 예 시 |
|-----|---|
| 사 정 | <p>●학생의 선호도: 영식이는 물을 싫어하며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 좋아하는 것은 공놀이이다.</p> <p>●부모의 선호도 및 욕구: 부모님은 영식이가 어릴 적에 월 1 회 정도 볼링장에 놀러감. 어릴적에는 영식이가 구경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놀았으나, 중학생의 행동으로는 부적합한 행동이 되어 현재는 주말에 TV 볼링경기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함.</p> <p>●지역사회 자원조사: - 학교 프로그램: 클럽활동 프로그램,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 ○○ 중학교 CA 프로그램은 주 1회 4시간 전일제 프로그램임. 비디오 감상부, 스케이트부, 포켓볼, 수영부, 영화감상부, 영어회화부, 볼링부, 독서부 - 복지관 프로그램: ○○ 청소년 수련실, YMCA 실내 수영, 00사회복지관 - 사설 프로그램: 00주말 레포츠프로그램, 바둑교실, E○영어회화 교실, 사물놀이, 종이접기 - 옹호 집단: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 장애인 부모회, 공동육아 방과 후 교실, 국민 체력 센터</p> |
| | <p>●영식이가 클럽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p> <p>●영식이와 부모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클럽활동 프로그램을 정한다.</p> <p>●학교교사 외에 클럽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p> <p>※ 영식이는 공놀이를 좋아해서 실외에서 놀기를 좋아하나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 실외에서 장시간 오래 있기에는 문제가 있다. 부모님이 볼링 경기를 좋아하고 영식이도 공놀이를 좋아하므로 클럽활동 부서로 볼링부에 들기로 한다. 볼링부는 지역사회에 있는 볼링장에 가서 수업이 이루어진다.</p> |
| 계 획 | <p>●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에서 지원망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탐색하고 섭외함 - 학교: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담당 교사, 청소년단체(스카우트, RCY, 우주정보소년단) 담당 교사, 양호교사, 체육부장, 특수교육교사, 담임교사 - 친구: 학교, 동아리, 교회, 이웃의 친구 - 지역사회: 복지관 방과 후 담당교사, 좋은 아버지들의 모임, 청소년 수련관 CA지원 교사, 청소년 문화의 집 담당 직원, ○○교회주일학교 청년부 교사</p> <p>●지원망의 주요 활동가 구성: 부모, 특수교육교사, 담임교사, 학교 특별활동담당교사, 청소년수련관 CA 활동 지원 교사, 볼링부 부장 학생</p> <p>●지원망모임의 일정계획: 3월; 월 2회, 4월-6월; 월 1회, 7월-12월; 2개월에 1회. 학교에서 실시</p> <p>●실행 및 평가: 현재 참여하는 여가활동, 영식이의 흥미, 욕구, 부모의 욕구, 지역사회 여가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학생의 참여도 및 반응 정보 제공, 수정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p> |
| | <p>●기술 습득 및 참여를 위한 지원 과제분석 실시, 차이 분석을 통한 수정 방법 고안, 기술 습득을 위한 교수방법 결정함.</p> <p>- 자신의 볼링공을 구별하기 위해 컴퓨터 게임 캐릭터 스티커 붙이기, 옆 라인과 동시에 공을 굴리지 않기 위해 가운데 라인이 아니라 가장자리 라인에서 치게 함, 친구와 음료수를 서로 사주는 것에 대한 교수, 스페어 처리시 또는 스트라이크 시 박수치기, 하이 파이브하는 것에 대한 교수 계획</p> <p>- 월 2회는 개인별 성취 누가 기록, 월 2회는 편 대항 게임 실시, 편대항시 영식이는 가장 잘 하는 학생과 짝이 되어 영식이가 처음 순서로 치면 짝은 스페어 처리를 함. 어려운 스페어 처리를 할수록 점수가 부가되는 것으로 규칙 수정</p> |
| | <p>●지역사회 볼링장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사항에 대한 관리계획: 지하철 내 미아보호소 전화 번호 알아두기, 비상연락망 구축, 쉽게 찾을 수 있는 제 2의 만남의 장소 미리 정하기, 영식이가 좋아하는 장소(주차장, 엘리베이터) 알아두기</p> |
| | <p>●통합 촉진을 위한 지원 역할 창출 및 책임성 판별: - 볼링장 직원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 - 볼링부 클럽활동 부원을 대상; 장애학생 이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영식이에겐 적합한 수정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수정방법 창작 실시</p> <p>●부모님은 주말에 영식이와 함께 볼링장에 가서 클럽활동 시간에 배운 것을 연습함.</p> <p>●청소년 수련관 클럽활동 지원교사가 볼링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함 (클럽활동 담당교사는 한 가지 부서에만 있을 수 없으므로)</p> |
| 실 행 | <p>●주 1회 클럽활동 시간과 특수학급에서의 수업시간에 여가기술 습득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짐</p> <p>●실행과정을 감독, 비디오 촬영 및 일지 기록, 성취도 기록지 작성</p> |
| | <p>●영식이는 여가시간이 변화(TV 보는 것에서 지역사회 여가 활동의 참여시간의 증가)하고, 관련 기술(버스타고 이동하기, 음료수 사먹기, 사회성)의 향상, 친구와 다른 시간에서의 상호작용이 증가됨.</p> |
| 평 가 | <p>●또래는 수정한 규칙으로 인해 볼링기술이 향상되고 영식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됨</p> <p>●부모님은 다시 볼링장에 가게 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여가의 형태가 변화함</p> |
| | <p>●평가 결과 다음 학기에 다른 장애학생의 참여고려, 클럽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때 발표함</p> |
| | <p>●평가 결과 다음 학기에 다른 장애학생의 참여고려, 클럽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때 발표함</p> |

2. 장애인의 여가활동의 문제점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건물의 계단, 휴식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미비하다’ 는 문항에 공감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응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가 56.2%(68명), ‘대체로 그렇다’ 가 31.4%(38명)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와 ‘별로 그렇지 않다’ 는 각각 0.8%(1명), 1.7%(2명)에 지나지 않았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1급 및 2급의 중증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공감의 정도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되지만, 편의시설이 단순히 여가생활만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공감의 정도가 높았던 문항은 ‘여가활동을 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로 30.6%(37명)가 ‘매우 그렇다’ , 46.3%(56명)가 ‘대체로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셋째, ‘시설이 부족하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26.4%(32명)가 ‘매우 그렇다’ , 43.8%가 ‘대체로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높게 나타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에 대해서는 15.7%(19명)가 ‘매우 그렇다’ , 43.0%(52명)가 ‘대체로 그렇다’ 고 응답했다. ‘여가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9.9%(12명)가 ‘매우 그렇다’ , 26.4%(32명)가 ‘대체로 그렇다’ 고 응답하여, 이들 중 3분의 1이상이 여가활동을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거동하기 어렵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13.2%(16명)가 ‘매우 그렇다’ , 또 같은 비율인 13.2%가 ‘대체로 그렇다’ 고 응답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약 25%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와 ‘대체로 그렇다’ 가 각각 4.1명(5명), 13.2(16명)로 나타나는데, 이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비장애인의 시선은 그다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표〉 여가활동의 방해요인

| 순위 | 방해요인 | 평균 | 표준편차 |
|----|------------------------|------|------|
| 1 | 편의시설이 미비하다(계단·휴식 공간 등) | 4.40 | .80 |
| 2 |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4.02 | .87 |
| 3 | 시설이 부족하다 | 3.87 | .94 |
| 4 | 정보를 얻기 어렵다 | 3.62 | .92 |
| 5 |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 3.19 | 1.01 |
| 6 | 시간적 여유가 없다 | 2.75 | 1.08 |
| 7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2.63 | 1.35 |
| 8 |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 2.31 | 1.16 |

3. 여가활동의 결론 및 개선방안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있어서는, 보다 폭넓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애인 여가생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가장 높은 정도로 요구하였다.

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시설의 부족도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중증지체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된다.

첫째, 물리적 편의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여가활동전문가를 양성한다.

셋째, 장애인 전용 여가활동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끝으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모집 및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회의 경제적 여건 및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비례적으로 증가되어,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자립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으며, 또한 개인 및 사회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은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충분히 있지만, 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위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여가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방법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부 록 2>

여가태도척도

작성일 : . . .
 작성자 : (인)

| | | 매우 그렇다 - 5 | 그렇다 - 4 | 잘 모르겠다 - 3 | 그렇지 않다 - 2 | 전혀 그렇지 않다 - 1 |
|------------|---------------------------------------|------------|---------|------------|------------|---------------|
| 항목 NO | 질 문 | 5 | 4 | 3 | 2 | 1 |
| 1 |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건전한 시간활용이다. | | | | | |
| 2 | 여가활동은 행복과 직접 관련이 있다. | | | | | |
| 3 | 여가활동은 자기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 | | | | |
| 4 | 여가활동은 중요한 것이다. | | | | | |
| 5 | 여가활동 중에는 시간이 정말 잘 간다. | | | | | |
| 6 | 나는 나의 여가활동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7 | 여가활동은 나에게 즐거운 경험들을 경험한다. | | | | | |
| 8 | 여가활동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 | | | | |
| 9 | 나는 여가활동은 자주한다. | | | | | |
| 10 | 시간과 돈이 허락한다면 나는 새로운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다. | | | | | |
| 11 | 나는 여가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 | | | | |
| 12 | 나는 나의 여가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 | | | | |
| 합 계 | | | | | | |

-의미있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사람들-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여가만족도

작성일 : . . .
 작성자 : (인)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내가 하고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내가 하고있는 여가활동은 내 주변에 관련된 지식을 얻게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나의 여가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내가 하고있는 여가활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나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해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신선하고 깨끗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내가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내가하는 여가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흥미를 갖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3 |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신체적인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보기가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내가하는 여가활동은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 |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좋게 때문에 여가활동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건강을 지켜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중점

-의미있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사람들-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개별프로그램계획(레저그램)
(Individual Program Planning)

작성일 : . . .
작성자 : (인)

▶ 성명(성별) : () ▶ 연령 : 세 ▶ 진단명 :

| 여가활동명 | 여가요소 | | | | | | 자 원 | 강 점 | 문제행동목록 |
|--|------|---|---|---|---|---|-----------|-----|--------|
| | S | G | M | P | O | H | | | |
| | | | | | | | | | |
| 여가활동유형 | 형 | | | | | | | | |
| 목표행동 | | | | | | | | | |
| 서비스영역 | 구성요소 | | | | | | 프 로 그 램 명 | | |
| 기능적 개입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여가교육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레크리에이션 참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결 정

| 서비스 영역 | 구성요소 | 프 로 그 램 명 |
|---------|------|-----------|
| | | |
| COMMENT | | |

-의미있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사람들-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스트레스 지수

작성일 : . . .
 작성자 : (인)

● 해당하는 칸에 ○표기하시오. / ● 나는 요즘에

| 번호 | 문항 | 예 |
|-----|---------------------------------|---|
| 1 | 몸이 개운하지 않다. | |
| 2 | 눈이 피로하다. | |
| 3 | 때때로 코가 막힌다. | |
| 4 | 현기증을 느끼곤 한다. | |
| 5 |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다. | |
| 6 | 귀울림 증상이 있다. | |
| 7 |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다. | |
| 8 | 목이 아플 때가 있다. | |
| 9 | 혀가 하얗게 된다. (백태현상) | |
| 10 | 지금까지 좋아했던 음식이 싫어진다. | |
| 11 | 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 |
| 12 | 배가 팽만하고 아프기도 하다. | |
| 13 | 무엇을 하면 곧 피로해진다. | |
| 14 | 등이나 허리가 아프다. | |
| 15 |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 |
| 16 | 최근 체중이 줄었다. | |
| 17 | 어깨가 결린다. | |
| 18 | 일에 대한 의욕이 없다. | |
| 19 | 때때로 어지럽다. | |
| 20 | 잠을 푹 자지 못한다. | |
| 21 | 꿈을 꿀 때가 많다. | |
| 22 | 한밤중에 눈이 떠진다. | |
| 23 | 갑자기 숨이 답답해진다. | |
| 24 | 때때로 기억력이 떨어진다. | |
| 25 | 때때로 구내염(혀바늘)이 생긴다. | |
| 26 | 감기에 잘 걸린다. | |
| 27 |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 | |
| 28 | 손발이 차가운 편이다. | |
| 29 | 손발바닥에 땀이 많이 난다. | |
| 30 | 가슴이 아파질 때가 있다. | |
| 합 계 | 본인이 ○로 체크한 개수 : (개) | |

-의미있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사람들-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여가동기척도

작성일 : . . .
 작성자 : (인)

성명 : (남 여) 혈액형 : 형
 나이 : 세 직업(구체적으로 기입) :

■ 다음 문항들은 당신이 어떤 이유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답을 각 칸에 V표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기는 이다.

| 항목 | 질문 | 항상 그렇다 (5) | 그렇다 (4) | 때때로 그렇다 (3) | 별로 아니다 (2) | 전혀 아니다 (1) |
|-----|---------------------------------|------------------|------------|-------------------|------------------|------------------|
| 1 | 흥미를 더하기 위해 | | | | | |
| 2 | 자극을 받기 위해 | | | | | |
| 3 | 더욱 의미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 | | | | | |
| 4 | 주변 환경에 대하여 알기 위해 | | | | | |
| 5 |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 | | | | |
| 6 |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 | | | | |
| 7 | 자신에 대해 알기 위해 | | | | | |
| 8 |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 | | | | |
| 9 |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 | | | | |
| 10 | 창의적으로 되기 위해 | | | | | |
| 11 | 독창적이 되기 위해 | | | | | |
| 12 | 상상력을 펼치기 위해 | | | | | |
| 소 계 | | | | | | |
| 13 | 타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 | | | | |
| 14 | 타인들과의 우정을 만들기 위해 | | | | | |
| 15 | 타인들과의 상호관계를 위해 | | | | | |
| 16 | 어색했던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 | | | | |
| 17 |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 | | | | |
| 18 | 타인을 돕기 위해 | | | | | |
| 19 | 타인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 | | | | |
| 20 | 타인에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술들을 보여주기 위해 | | | | | |
| 21 | 타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 | | | | |
| 22 | 사회적으로 능력 있기 위해 | | | | | |
| 23 | 소속감을 갖기 위해 | | | | | |
| 24 |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 | | | | |
| 소 계 | | | | | | |

| 항목 | 질문 | 항상 그렇다 (5) | 그렇다 (4) | 때때로 그렇다 (3) | 별로 아니다 (2) | 전혀 아니다 (1) |
|-----|--------------------------|------------------|------------|-------------------|------------------|------------------|
| 25 | 성취감을 얻기 위해 | | | | | |
| 26 |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기 위해 | | | | | |
| 27 | 내 능력에 도전하기 위해 | | | | | |
| 28 | 무언가 성취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 | | | | | |
| 29 | 그것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 | | | | |
| 30 | 그것을 함으로써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 | | | | |
| 31 | 타인과의 경쟁을 위해 | | | | | |
| 32 | 활동적이 되기 위해 | | | | | |
| 33 | 신체적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 | | | | |
| 34 |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 | | | | |
| 35 | 신체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 | | | | |
| 36 | 신체건강을 위해 | | | | | |
| 소 계 | | | | | | |
| 37 |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있기 위해 | | | | | |
| 38 | 군중을 피하기 위해 | | | | | |
| 39 | 생활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 | | | | |
| 40 | 때때로 고독을 즐기기 위해 | | | | | |
| 41 | 신체적인 이완을 위해 | | | | | |
| 42 | 정신적인 이완을 위해 | | | | | |
| 43 |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 | | | | |
| 44 | 휴식을 취하기 위해 | | | | | |
| 45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 | | | | |
| 46 | 간단하고 쉬운 것들을 하기 위해 | | | | | |
| 47 | 반복되는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 | | | |
| 48 | 일상의 의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A | | B | | C | | D | |
|---|--|---|--|---|--|---|--|

-의미있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사람들-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여가활동유형척도

작성일 : . . .
 작성자 : (인)

성명 : (남 여) 혈액형 : 형
 나이 : 세 직업(구체적으로 기입) :

본인이 즐기는 여가활동의 번호 위에 ○표기한 후에 각 여가요소별로 아래를 참고하여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여가활동명 | 여가요소 | | | | | | 번호 | 여가활동명 | 여가요소 | | | | | |
|----|------------|------|---|---|---|---|---|----|--------------|------|---|---|---|---|---|
| | | S | G | M | P | O | H | | | S | G | M | P | O | H |
| 1 | 걷기 | | | | | | | 31 | 목욕 | | | | | | |
| 2 | 검도 | | | | | | | 32 | 물속걷기 | | | | | | |
| 3 | 게이트볼 | | | | | | | 33 | 뮤지컬관람 | | | | | | |
| 4 | 골프 | | | | | | | 34 | 미술관 관람 | | | | | | |
| 5 | 그림그리기 | | | | | | | 35 | 박물관 관람 | | | | | | |
| 6 | 글쓰기 | | | | | | | 36 | 배드민턴 | | | | | | |
| 7 | 기공체조 | | | | | | | 37 | 별자리 구경 | | | | | | |
| 8 | 기차여행 | | | | | | | 38 | 보드게임(바둑등) | | | | | | |
| 9 | 나이트댄스 | | | | | | | 39 | 볼링 | | | | | | |
| 10 | 낚시 | | | | | | | 40 | 비디오감상 | | | | | | |
| 11 | 낮잠 | | | | | | | 41 | 비디오촬영 | | | | | | |
| 12 | 노래부르기 | | | | | | | 42 | 사우나 | | | | | | |
| 13 | 놀이시설이용하기 | | | | | | | 43 | 사진촬영 | | | | | | |
| 14 | 농구 | | | | | | | 44 | 산악자전거타기 | | | | | | |
| 15 | 다트 | | | | | | | 45 | 삼림욕 | | | | | | |
| 16 | 당구 | | | | | | | 46 | 서바이벌게임 | | | | | | |
| 17 | 댄스스포츠 | | | | | | | 47 | 서예 | | | | | | |
| 18 | 데이트(이성교제) | | | | | | | 48 | 썰매타기 | | | | | | |
| 19 | 도예 | | | | | | | 49 | 쇼핑 | | | | | | |
| 20 | 독서 | | | | | | | 50 | 수공예(십자수 등) | | | | | | |
| 21 | 동호회(동아리)활동 | | | | | | | 51 | 수상레포츠 | | | | | | |
| 22 | 드라이브 | | | | | | | 52 | 수영 | | | | | | |
| 23 | 등산 | | | | | | | 53 | 수집 | | | | | | |
| 24 | 라디오청취 | | | | | | | 54 | 스노우보드타기 | | | | | | |
| 25 | 라켓볼 | | | | | | | 55 | 스카이다이빙 | | | | | | |
| 26 | 래프팅 | | | | | | | 56 | 스케이팅(ICE/IN) | | | | | | |
| 27 | 마술 | | | | | | | 57 | 스쿼시 | | | | | | |
| 28 | 만화그리기 | | | | | | | 58 | 스크랩 | | | | | | |
| 29 | 메모하기 | | | | | | | 59 | 스키 | | | | | | |
| 30 | 영상 | | | | | | | 60 | 스트레칭 | | | | | | |

| 번호 | 여가활동명 | 여가요소 | | | | | | 번호 | 여가활동명 | 여가요소 | | | | | |
|---------|--------------|------|---|---|---|---|---|-----|--------------|------|---|---|---|---|---|
| | | S | G | M | P | O | H | | | S | G | M | P | O | H |
| 61 | 스포츠경기관람 | | | | | | | 91 | 종교활동 | | | | | | |
| 62 | 승마 | | | | | | | 92 | 지역사회활동 | | | | | | |
| 63 | 악기연주(사물놀이포함) | | | | | | | 93 | 차 마시기 | | | | | | |
| 64 | 암벽타기(인공/아이스) | | | | | | | 94 | 채소재배 | | | | | | |
| 65 | 애완동물 키우기 | | | | | | | 95 | 체스(서양보드게임) | | | | | | |
| 66 | 에어로빅 | | | | | | | 96 | 축구 | | | | | | |
| 67 | 야구 | | | | | | | 97 | 친구만나기 | | | | | | |
| 68 | 야유회 | | | | | | | 98 | 컴퓨터게임 | | | | | | |
| 69 | 여행 | | | | | | | 99 | 콘서트관람 | | | | | | |
| 70 | 연극관람 | | | | | | | 100 | 탁구 | | | | | | |
| 71 | 열기구타기 | | | | | | | 101 | 탐조 | | | | | | |
| 72 | 영화감상 | | | | | | | 102 | 태권도 | | | | | | |
| 73 | 오토바이타기 | | | | | | | 103 | 테니스 | | | | | | |
| 74 | 외식 | | | | | | | 104 | 텔레비전시청 | | | | | | |
| 75 | 요가 | | | | | | | 105 | 통신교신(E-m,Hp) | | | | | | |
| 76 | 요리 | | | | | | | 106 | 투호 | | | | | | |
| 77 | 우드볼 | | | | | | | 107 | 트래킹 | | | | | | |
| 78 | 원예(화초재배) | | | | | | | 108 | 패션(피부 관리 등) | | | | | | |
| 79 | 윈드크루저 | | | | | | | 109 | 패러글라이딩 | | | | | | |
| 80 | 유람선타기 | | | | | | | 110 | 팬클럽활동 | | | | | | |
| 81 | 음악 감상 | | | | | | | 111 | 퍼즐 | | | | | | |
| 82 | 이벤트행사참여 | | | | | | | 112 | 편지쓰기 | | | | | | |
| 83 | 인터넷검색 | | | | | | | 113 | 포켓볼 | | | | | | |
| 84 | 일기쓰기 | | | | | | | 114 | 포크댄스(민속무용) | | | | | | |
| 85 | 자전거타기 | | | | | | | 115 | 프라모델조립 | | | | | | |
| 86 | 자원봉사활동 | | | | | | | 116 | 하이킹 | | | | | | |
| 87 | 재즈댄스 | | | | | | | 117 | 합주 | | | | | | |
| 88 | 제트스키 | | | | | | | 118 | 합창 | | | | | | |
| 89 | 조깅 | | | | | | | 119 | 행글라이더 | | | | | | |
| 90 | 족구 | | | | | | | 120 | 헬스 | | | | | | |
| 소 계 | | | | | | | | 소 계 | | | | | | | |
| 여 가 유 형 | | 형 | | | | | | | | | | | | | |

-의미있는 즐거움을 찾아주는 사람들-
(사)한국디지털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특수교육을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원종대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특수교육을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원종대

1. 시작하는 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확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실시를 명시함으로써 법률 대상이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로 확대되고 개별적인 접근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면,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직업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포함시키는 등 크게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으로 특수교육의 의미를 대폭 수정하였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특수교육의 개념 속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교육 또는 특수교육의 영역만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부부처간의 협조 체제

특수교육법 제5조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특수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등 주요 관계기관 및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을 때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부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담당 업무 중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족지원, 학습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업교육 지원 등은 반드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야만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가. 장애의 조기발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3세미만 영아는 교육 대상이 아니고 보육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법에서는 이들을 무상 특수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나 관련 기관 등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 조기 특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지역내 보건소, 병·의원에서 장애 및 장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유치원 및 학교에서도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별은 2007년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만6세미만 영유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므로 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되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영유아는 그 명단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달하여 교육적 진단·평가, 부모 상담, 무상교육 등을 보다 조기에 실시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관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진단·평가 의뢰, 정보 전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나.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만 3세미만의 영아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 보육 대상이므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지만, 장애영아의 경우 특수교육법에 따라 해당 거주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및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 받아 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수학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일반유치원은 만3세부터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만3세미만 영아는 일반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고 따라서 장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아교육을 담당하도록 된 것이다.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연령 제한으로 인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영아가 있으므로 우선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장애영아교육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영아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서 영아교육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영아 담당교원의 양성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것인지, 또는 특수 보육교사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장애영아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는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는 교육청, 시청 등의 어디를 주체로 할 것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4. 보육시설의 장애영아 교육지원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취학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보호자에게 교육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담당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보육시설 이용도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려면 최소한 장애유아 3명 혹은 4명당 유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보육시설의 경우 교사의 보수체계, 근무조건 등이 학교나 유치원보다 열악하여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보육시설 이용 장애유아수가 교육기관보다 월등히 많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기존의 배치 기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배치되는 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특수교육대상 장애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보육시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므로 의무교육 대상 장애유아가 이용하더라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각 지역마다 보육시설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자 협의회 혹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보육시설 이용 장애유아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5.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장애유형이나 특성 등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학교졸업 후 직장 혹은 독립된 성인생활로의 전환에 필요한 모든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을 통합하였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공과 설치 목적도 전문기술교육 실시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취업이나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공과 설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과를 둘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학급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 전공과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과는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또래들은 졸업하고 없는 상황이어서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일반학교 배치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오히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직업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가. 가족지원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과 연계하여만 가능하다고 본다.

나. 치료지원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인 치료지원은 불가능하다.

그 동안 치료교육 교사는 치료교육활동의 영역별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전문 치료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에 치료교육활동도 치료교사도 없어졌다. 그렇다면 현재 치료사는 전문성이 있는가? 치료라는 단어는 붙이면 다 치료인 것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제공해오던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은 치료지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였다.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규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행훈련과 심리·행동적응훈련은 의료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치료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행훈련은 시각장애학생에게, 심리·행동적응훈련은 정서장애학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애학생에게 매우 필요한 활동이다.

치료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일정 인원의 치료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치료사 배치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이다.

다. 보조인력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 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 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 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 지원인력은 장애인복지 영역의 활동보조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라.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등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고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장애인복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 통학 지원

교육청은 특수학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교통정책 차원에서도 장애학생 통학지원을 살펴볼 일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장애학생 전체를 보면, 일상생활훈련>언어치료>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치료 순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도 보행훈련(시각장애 일상생활훈련에 포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은 치료지원이 아닌 기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다.

7.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지역평생교육센터에서도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법보다는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확대 개설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성인 야학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8. 맺음말

요즘 들어 법과 행정, 그리고 현실적 상황이라는 화두를 자주 생각하게 된다. 특수교육법은 현실을 앞서 보다 이상적인 실현을 추구한다. 하지만 행정은 너무나 더디고 느리다. 예산이 필요하고 인적자원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어느 것 하나 단숨에 해결하지를 못한다.

그래도 그것이 현실이라면 우보처럼 느려도 탄탄하게 딛고 나아가야 한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추진 현황

이규원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추진 현황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규원

최근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중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내용에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및 ‘성년후견인제 도입’을 과제로 선정함바 있다. 또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도 ‘장애인복지 선진화’ 분야 과제에서도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중점추진과제로, ‘성년후견서비스 도입’을 일반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는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과제는 장애아동이 성장 또는 부모 사망 후 법률 및 일상생활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성년후견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정책에 맞추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장애아동수당’ 등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사업’ 등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등 간접지원사업, 장애인 단체 사업지원을 통한 가족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사업 (직접지원)

◇ 사업목적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에게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 돌봄에 따른 부담을 경감

◇ 사업개요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2009년도 계획 : 장애아동 가족 25세대 / 현 지원 가족 19세대
- 사업기관 : 1개소 (장애인부모회)
- 사업비 : 91,254천원 (국비 63,878, 시비 27,376)

◇ 기대효과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가족안정성 강화

◇ 지원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 가족지원프로그램 (직접지원)

◇ 사업목적

- 장애인가족이 갖는 어려움과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 가족기능의 안정성 강화

◇ 사업개요

- 시기 : 2009. 1~12월(연중)
- 대상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장애인 가정등
- 내용 : 장애인가정사례관리, 가족상담, 사랑방운영,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등
- 주최 :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 기대효과

-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가족들에게 바람직한 가족역할 재구조화를 통한 가족의 안정성 도모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캠프 (간접지원)

◇ 사업목적

- 장애아동, 가족 등에게 가족미술활동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인식 고취 및 자존감 고취 등 사회적응 향상도모

◇ 사업개요

- 시기 : 2009. 4월
- 장소 : 부여땅 자연미술학교
- 인원 : 80여명(장애아동 및 가족 등)
- 내용 : 자연물을 이용한 매체활동,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체험활동, 감수성 훈련을 통한 교감활동, 등산 및 소·대 근육운동, 전래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 주최 : (사)한국아동발달지원연구소

◇ 기대효과

- 가족지원 캠프를 통한 교육 및 치료 등 정보교환의 장 마련

위에 설명한 사업 외에도 시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 중인 장애아동 계절학기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가족이 사회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코자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등을 각 구별 1개소씩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